

수도 물 공급 중단

1.1항 거주지에 대한 단수. 수도 요금 청구서는 수령 시 즉시 납부해야 합니다. 청구서는 해당 월의 10일 현재 연체중이며 완납될 때까지 연체 상태로 있게 됩니다. 이 번달 20일에 미납된 현재 요금에 대해 10%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고객님의 은행계좌에 입금된 금액으로 연체 금액의 부분 결제가 허용되지만, 이러한 부분 결제로 인해 연체상태가 해소되는 것은 아닙니다.

A. 디스트릭트는 최소 60일 동안 고객이 요금을 연체하더라도 요금 미납으로 수도물 공급을 중단하지 않습니다. 미납으로 인한 주거용 단수조치 시행 영업일 최소 7일 전에 디스트릭트는 계좌에 이름이 기재된 고객에게 우편 통지를 통해 연락하고 연체 금액, 지불 기한 또는 대안 약정, 연체 요금 지불 기한 연장 신청 절차에 대한 설명을 고객에게 서면으로 제공합니다.

B. 미납으로 인한 주거용 단수조치를 방지할 수 있는 대안을 제공하지만, 여기에는 납부 유예, 최소 납부, 미납 잔액 분할 상환 요청 절차, 청구서 검토 및 이의 신청으로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미납에 대한 거주지 단수에 대한 디스트릭트의 정책을 고객에게 서면으로 제공할 것을 제안합니다.

디스트릭트가 미국 우편으로 거주지에 거주하는 고객 또는 성인과 연락할 수 없는 경우는, 디스트릭트는 미납으로 인한 임박한 주거지 단수 및 주거지 단수에 대한 디스트릭트의 정책에 관한 통지서를 거주지를 방문하여 눈에 잘 띄는 장소에 두고 떠나는 성실한 노력을 기울일 것입니다.

요금이 연체된 고객은 661-256-3411로 디스트릭트에 연락하여 단수를 방지하기 위한 대안에 대해 상의할 수 있습니다.

1.2항 RCSD가 단수 조치를 하지 않는 경우. 디스트릭트는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미납으로 인한 거주지 단수조치를 하지 않습니다:

(1) 고객 또는 고객의 임차인은, 거주지 단수조치가 생명을 위협하게 되거나 또는 거주지 수도공급이 제공되는 시설의 거주자의 건강과 안전에 심각한 위협이 될 거라는 복지 및 제도법 제14088조 제(b)항 제(1)항 (A)호에 정의된 것처럼, 1차 진료자의 증명서를 디스트릭트에 제출하십시오; 그리고

(2) 고객은 디스트릭트의 정상적인 청구 기간 내에 거주지 수도 물 비용을 지불할 수 없음을 입증하세요. 고객님의 가족 중 누구라도 현재 캘리포니아 근로 기회 및 자녀에 대한 책임 프로그램(CalWORKs), 칼프레쉬(CalFresh), 일반 지원, 메디-콜, 생활보조금/주 생계 지급 프로그램의 수령자, 여성, 유아 및 아동을 위한 캘리포니아 특별 보충 영양 프로그램 또는 고객이 가구의 연간 소득이 연방 빈곤 수준의 200% 미만이라고 소득 신고하는 경우, 고객은 디스트릭트 정상 청구 기간 내에 거주지 수도 물 서비스에 대한 비용을 재정적으로 지불할 수 없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그리고

(3) 고객이 할부 상환 계약 또는 대체 지불 일정을 체결할 의사가 있는 경우.

디스트릭트는 이 세 가지 조건을 충족하는 고객에게 체납액 상환을 위한 다음의 대안을 제공할 것입니다. 1.미납금의 할부 상환. 2.대체 지급 일정. 각 옵션에 따른 상환 기간은 경영진의 승인을 받아야 하지만 일반적으로 12개월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고객 이 (1) 60일 이상 납부계획을 이행하지 않거나, 고객 이 (2) 납부계획을 이행하면서 60일 이상 현재 요금을 지불하지 않는 경우, 거주용 단수 조치는 해당 디스트릭트가 눈에 잘 띄는 장소에 단수조치를 취하겠다는 최종 통지서를 게시한 후 영업일 기준 5일 이내에 실시할 수 있습니다.

1.2.2항 저소득층 고객을 위한 연체료 면제. 가구 소득이 연방 빈곤선의 200% 미만임을 증명하는 고객의 경우, 디스트릭트는 12개월에 한 번씩 연체료를 면제합니다. 가구원 중, 현재 캘리포니아 근로 기회 및 자녀에 대한 책임 프로그램(CalWORKs), 칼프레쉬(CalFresh), 일반 지원, 메디-콜, 생활보조금/주 생계 지급 프로그램의 수령자, 여성, 유아 및 아동을 위한 캘리포니아 특별 보충 영양 프로그램의 수혜자 또는 고객이 가구의 연간 소득이 연방 빈곤 수준의 200% 미만이라는 사실이 위증일 경우 처벌을 받는다는 진술서를 제출하는 경우, 해당 거주 고객은 가구 소득이 연방 빈곤선의 200% 미만인 것으로 간주됩니다

1.3항 체납중인 청구서와 이의제기. 고객이 청구서에 이의를 제기하고 디스트릭트 관리자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권리를 행사하는 경우, 디스트릭트는 이의 신청이 진행되는 동안 미납으로 단수를 하지 않지만, 여기에 제공되는 추가 요금은 계속 적용됩니다.

임박한 단수조치 통지를 받은 고객은 동일한 요율, 요금 또는 수수료에 대한 이의 제기가 이전에 접수되어 해결되지 않은 경우, 연체 청구서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고객은 체납 청구서 수령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이의 제기를 해야 합니다. 고객은 해당되는 경우 디스트릭트에서 제공한 양식으로 디스트릭트의 청구서 관행에서 주장된 오류에 대한 설명을 포함하여 이의제기의 근거를 설명하는 서면 항소 통지서를 전달해야 합니다. 양식은 디스트릭트

웹사이트 또는 디스트릭트 사무소에서 제공됩니다. 이의제기는 다음 절차에 따라 검토, 청취 및 해결됩니다:

- A. 행정담당관 또는 피지명자는 이의제기서 및 이의제기를 뒷받침하기 위해 제출된 모든 자료를 검토하고 이의제기를 접수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이의제기와 관련된 잠정 결정을 내릴 것입니다.
- B. 행정 담당관 또는 피지명자는 이의 제기 당사자에게 잠정 결정을 우편으로 발송할 것입니다.
- C. 고객은 잠정 결정 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잠정 결정에 동의하거나 공공 사업부 차장/담당관과의 회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D. 회의가 요청될 경우, 공공 사업부의 차장/담당관은 15일 이내에 회의 일정을 잡을 것입니다.
- E. 회의 시작 최소 10일 전에, 회의 날짜 및 시간에 대한 서면 통지가 고객에게 우편으로 발송됩니다.
- F. 회의가 끝나면, 공공 사업부 차장/담당관은 7일 이내에 최종 결정을 서면으로 항소인에게 우편으로 발송할 것입니다.
- G. 고객은 통지서를 발송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차장/공공 공사 담당관의 불리한 결정에 대해 국장에게 항소할 수 있습니다. 국장은 10일 이내에 결과에 대한 고객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습니다. 최종적으로 국장이 결론을 내립니다.

1.4항 **건물주과 세입자의 입장.** 이 조항은 거주자와 거주지의 소유자, 관리자 또는 운영자 사이에 건물주-세입자 관계가 있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1. 디스트릭트에서 노동자 대기소 내 단독주택, 공동주택, 이동식홈파크 또는 영구주거건축물의 거주자에게 개별 계량주거서비스를 제공하고 그 주거지, 구조, 공원의 소유자, 관리자 또는 운영자가 기록상 고객인 경우, 디스트릭트는 계좌가 연체되어 단수되기 최소 10일 전에 수도 공급이 종료될 것임을 서면 통지를 통해 거주자에게 알리는데 성실히 노력할 것입니다. 서면 통지는 거주자에게 수도 요금을 연체 계정으로 지불할 필요없이 수도요금이 청구되는 고객이 될 권리가 있음을 추가로 알려주게 될 것입니다.

2. 디스트릭트는 각 거주자가 서비스 이용 약관에 동의하고 법률 및 디스트릭트의 규칙 및 관세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한 거주자에게 수도공급을 할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거주자 중 한 명 이상이 디스트릭트가 만족할 수 있도록 계정에 대한 후속 요금에 대한 책임을 질 의사가 있고 부담할 수 있는 경우, 또는 디스트릭트의 규칙 및 관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거주자에게 디스트릭트가 선택적으로 수도공급을 종료하기 위해 합법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물리적 수단이 있는 경우, 디스트릭트는 해당 요건을 충족한 거주자에게 수도물을 공급합니다.
3. 임대 또는 임대 계약은 계좌가 연체된 기간을 포함해야 합니다.
4. 디스트릭트는 단독주택의 경우, 다음 중 하나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 a. 제안된 단수 조치 시행 7일 전까지 단수조치를 통지합니다.
 - b. 연체 계정에 대한 체납액을 면제하기 위해서는, 고객이 된 입주자가 기록 상 체납자 계정의 고객이 주거의 건물주, 관리인 또는 대리인인지 확인하도록 요구합니다. 확인에는 임대 또는 임대 계약, 임대료 영수증, 거주자가 부동산을 임대하고 있음을 나타내는 정부 문서 또는 민법 제62조에 따라 공개된 정보가 포함될 수 있지만 이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2020년 01월 27일 채택됨

2023년 4월 12일 수정됨